

「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2년 7월 12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2년 7월 18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76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2년 7월 18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유통산업과장)

가. 제안이유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한 담당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여성농업인육성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를 업무 담당자로 지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여성농업인육성 위원회 위원 중 “농축산과장”을 “여성농업인 업무 담당과장”으로 변경(안 제6조)
- 나. 여성농업인육성 위원회 간사 “여성농업인업무 담당주사”를 “여성농업인 업무 담당팀장”으로 변경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남섭)

○ 본 조례안은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육성 업무의 담당부서장 및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.

○ 주요내용은

안 제6조제4항의

“농축산과장”을 “여성농업인 업무 과장”으로 변경하고자 하며

안 제7조제4항의

“여성농업인업무 담당주사”를 “여성농업인 업무 담당 팀장”으로 현행화 하는 내용임.

○ 검토결과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현행화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붙임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제1호 중 “농축산과장”을 “여성농업인 업무 담당 과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여성농업인업무 담당주사로”를 “여성농업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여성농업인육성 위원회의 설치 등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/p> <p>1. 농업기술센터소장, <u>농축산과</u> <u>장</u>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7조(회의 등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<u>여성농업인업무 담당주사로</u> 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6조(여성농업인육성 위원회의 설치 등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여성농업인</u> <u>업무 담당 과장</u>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회의 등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<u>여성농업인</u> <u>업무</u> <u>담당 팀장으로</u> 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